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제1장 야영장업의 이해

제1절 야영장업의 정의	008
1. 야영장업의 개념	008
2. 야영장업의 구분(종류)	010
3. 야영장 시설의 종류	020
제2절 야영장업 연혁	027
1. 주요연혁	027

제2장 야영장업의 업무체계 및 입지

제1절 야영장 업무체계의 이해	030
1. 야영장업 등록업무체계	030
2. 야영장업 등록절차 개요	031
3. 신규 및 변경등록	032
4. 서류심사	033
5. 현장확인	033
6. 등록처리	034
7. 승계 및 휴·폐업	034
제2절 야영장업의 입지	036

제3장 야영장업 관련법령

제1절 「관광진흥법」	044
제2절 「관광진흥법」 시행령	045
1. 공통기준	047
2.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051
3.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052
4. 등록 특례기준	054
제3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055
1. 화재예방기준	061
2. 전기사용기준	066
3. 가스사용기준	069
4. 대피관련기준	071
5.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073
6. 위생기준	077

제4장 야영장업의 안전점검 및 단속

제1절 야영장업 안전·위생점검 업무	080
1. 사업자의 점검의무	080
2. 지자체의 점검의무	080
3. 소방안전 점검표	082
제2절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083

제5장 주요 민원사례 Q&A

제1절 주요 민원 답변 사례 요약	088
제2절 주요 민원 답변 사례	091
1. 입지 관련 Q&A	091
2. 시설설비 관련 Q&A	093
3. 등록절차 관련 Q&A	097
4. 안전·위생점검 관련 Q&A	104
5. 보험 관련 Q&A	109
6. 기타 Q&A	109

부 록

1. 고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 소개	112
2. 야영장업 서류심사 등록시 체크리스트	113
3.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114
4. 야영장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15
5. 야영장업 시설물 안전점검표(사업자용)	116
6. 야영장 안전점검표(지자체용)	118
7. 방염성능검사 요약서	120
8.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122
9. 위반사항 벌칙조항(타법 포함)	123
10.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27
1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129
1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130
1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135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1





제1장 야영장업의 이해

제1절 야영장업의 정의

1. 야영장업의 개념
2. 야영장업의 구분(종류)
3. 야영장 시설의 종류

제2절 야영장업 연혁

1. 주요연혁



제1절 야영장업의 정의

[1] 야영장업의 개념

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이란

- 야영장업의 근거법률은 「관광진흥법」으로, 동 법령에 의해 등록·관리됨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 있음

관광사업 종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
일반여행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테마파크업	관광유희음식점업
국내외여행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기획업		일반테마파크업	관광극장유희업
국내여행업	가족호텔업	야영장업			기타테마파크업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호스텔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소형호텔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순환버스업
	의료관광호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사진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한옥체험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나. 야영장 관련법령

야영장별 관련 법령

NO.	관련법(관계부서)	법적 근거
1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서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관광진흥법」상의 야영장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청소년활동진흥법」	
2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시설에 포함됨
	자연공원법	
3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편의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하며, 숲속야영장도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한 기본시설로 야영장 설치 가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4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제3호의 휴양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되,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 하도록 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제4호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적시하고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기본 및 기능시설)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	교육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3호에 교육용 시설의 정의에, 폐교의 용도로 야영장이 추가로 신설 (2020.02.21. 시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육성), 시행규칙 제 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시설로 설치가능
	농어촌 정비법	

※ 청소년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제3조1항제3호다목에 의거 관광사업자가 아님

[2] 야영장업의 구분(종류)

1)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서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동법 시행령 제10조1항에서 안전점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2항 별표1에서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0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2. 부상자·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0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0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0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防壁)·울타리·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0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0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0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 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패널 등 연소시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별표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구분	주요 내용
(1) 야영지 (2) 야외집회장 (3) 대피시설	- 100인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용정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체육활동장 (5) 비상설비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야영정원 (7) 강의실 (8) 생활관	- 야영지에서 일시에 야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칠판·교탁·책상·결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lux) 이상이어야 한다.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교)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 가족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9) 야영지	가)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홍수의 범람·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도시공원·자연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을 100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1), (2) 및 (4)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

2) 국립공원 내 야영장 :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3.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야영장은 ‘공원시설’ 중 하나로 휴양 및 편의시설에 포함됨
-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자연공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함

3)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4(개정 2019. 7.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가. 숙박시설	숲속의 집·산림휴양관·트리하우스 등
나. 편의시설	임도·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오토캠핑장·야외탁자·데크로드·전망대·모노레일·야외쉼터·야외공연장·대피소·주차장·방문자안내소·산림복합경영시설·임산물판매장 및 매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샤워장 등
라. 체험·교육 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자연관찰원·전시관·천문대·목공예실·생태공예실·산림공원·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교육자료관·곤충원·동물원·식물원·세미나실·산림작업체험장·임업체험시설·로프체험시설·「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등
마. 체육시설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샬레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산악승마시설·운동장·다목적잔디구장·암벽등반시설·산악자전거시설·행글라이딩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 등
바. 전기·통신 시설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휴대전화중계기·방송음향시설 등
사. 안전시설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재해경보기·보안등·재해예방시설·사방댐·방송시설 등

2.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가. 숙박시설	1)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2)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편의시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 2)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다. 위생시설	1)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2)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라. 체험·교육 시설	1)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안전·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4)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갖추어 할 것
사. 안전시설	1) 긴급한 재난·안전사고 시 신속히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추어 할 것 2) 숙박시설에는 소화설비(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경보설비(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어 할 것 3)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4)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 시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것

비고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 숲속야영장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2., 2017. 6. 27.>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되도록 할 것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17.6.27>

별표 3의2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9조의3제1항 관련)

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일반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야영장·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나. 편의시설	임도·야외탁자·데크로드·전망대·모노레일·야외쉼터·야외공연장·대피소·주차장·방문자안내소·임산물판매장·매점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다.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라. 체험·교육 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목공예실·생태공예실·산림공원·숲속교실·숲속수련장·세미나실·산림작업체험장·임업체험시설·로프체험시설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
마. 체육시설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썰매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운동장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바. 전기·통신 시설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중계기·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사. 안전시설	울타리·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소화기·재해경보기·보안등·비상조명설비·비상조명기구·재해예방시설·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비고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본시설 안에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다

2. 숲속야영장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

구분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1)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5)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진입로 및 내부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6) 차량 주행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7)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시설별 설치 기준	1) 기본 시설	가)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다) 야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등을 유지할 것
	2) 편익·위생 시설	가)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나)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안전 시설	가) 긴급한 재난·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추는 것 나)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할 것 다)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라) 비상시 야영장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추는 것
비고		나목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별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4) 유원지 내 야영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1.>
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자연휴양림·간이취사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함

5)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적시하고 있음

6) 해수욕장 내 야영장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기본 및 기능시설
 -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량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항 가목 (기본 및 기능시설) 3)에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로 야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에 의해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인 해수욕장 야영장은 해수욕장의 개장 1개월 전부터 개장하기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개장기간 동안에는 매주 1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매월 2회) 이상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발 제한구역내 야영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2019. 10.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가) 마을공동,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10년이상거주자”라 한다)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관할 시·군·구 수의 3배 이내로 한다)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른다.
- 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 가능

8) 폐교 야영장: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0.〉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교육부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교육용시설’에 야영장을 폐교의 활용 용도로 포함하여 야영장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내 야영장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관광 농원 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식량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유실수, 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 조류 사육장, 초지, 축사, 양어장,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 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관광 농원 사업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관광농원내 야영장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 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의 승계), 제89조(사업장 폐쇄 등)에 따른 관광농원의 기타시설로 설치가능
- 관련법률로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등의 농지인 경우 농지법,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관리법, 기타 다른 지목이 합쳐져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참고사항 관광농원 내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법제2조제16호)을 말함
- 야영장이 관광농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 관광농원의 기타시설 중 하나로 설치가 가능함(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 단, 관광농원사업자가 야영장을 설치하여 이용료를 받는 등 영업행위로서 야영장 운영을 원한다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규모·시설·진입로 등 관광진흥법상의 야영장 등록요건 및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
- 이처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의 부대시설인 야영장 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업은 법적으로 별개의 지위를 가지며, 각각 소관법률에 따라 적용을 받음
-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야영장 등록기준 중 '야영장 시설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분의 10 미만'에 대한 해석문제임
- 즉, 관광농원의 특수성(기본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설치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관광농원내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 허용면적을 계산한다면 야영장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됨
- 따라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시설을 '야영장내 설치되는 시설 중 야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자가 야영장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시설'로 이해하고,
- 야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야영장업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 외의 기타 시설(관광농원의 목적으로만 설치·운영되는 시설 등)은 야영장 시설 기준에서 제외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함

10) 야영장업과 숙박업의 관계

-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포함)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고,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제2조 관련)

II. 개별기준

1. 숙박업

-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호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숙박업 운영 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통해 법에 규정된 종류별 시설기준(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서를 제출받은 자는 서류확인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동규칙 제3조 제2항)
- 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건축법」상 건축시설에 한해 신고가능하고,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숙박시설의 종류는 정해져 있음(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1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9. 야영장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위 표의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보듯이, 야영장시설은 숙박시설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영장업에서는 숙박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한다면 이는 야영장업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당해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설치·이용되어야 함

[3] 야영장 시설의 종류

-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됨(영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와 야영시설(글램핑텐트)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고급화된 야영(캠핑)으로, 야영의 한 형태일 뿐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 볼 수 없음

■야영장업 구분에 따른 야영지 규모 및 갖추어야 할 시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 기준

구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특례 ¹⁾
공통 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긴급 상황에 대 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 할 것 - 그 외 항목 동 일 적용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 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 건을 모두 갖추어 것 -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 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적용되지 않음
공통 기준		-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적용되지 않음
개 별 기 준	야영지 규모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등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좌동
	시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 것	(일반) 하수도 및 화장실 (자동차) 상·하수도, 전기, 화장실 및 취사시 설의 이용이 가능 할 것
	진입로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좌동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의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적용함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의2 및 별표1)에서는 야영장 시설은 기본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안전·전기·가스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야영장 시설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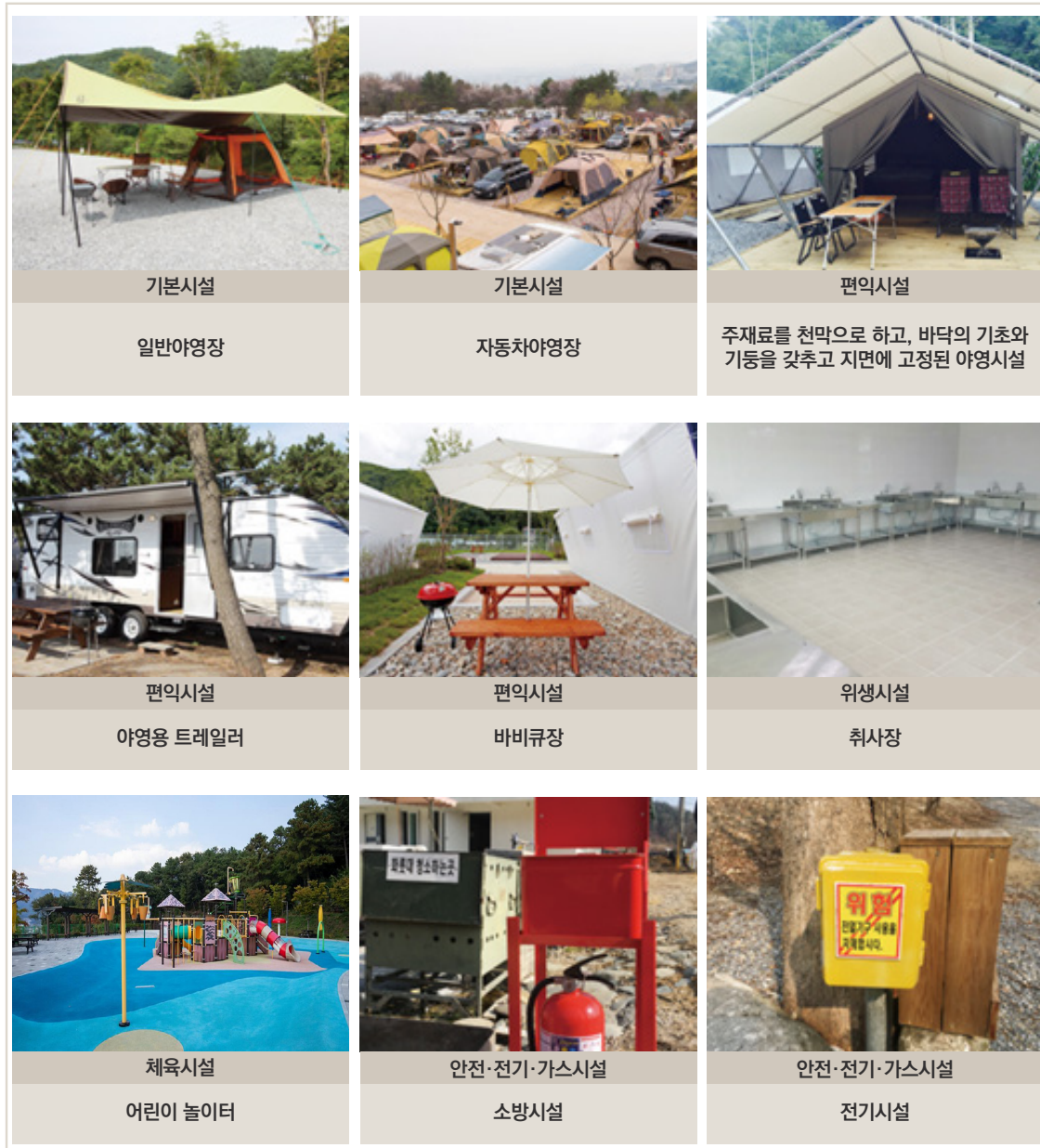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의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 야영장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u>12. 수련시설</u>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u>29. 야영장 시설</u>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 형태 및 구조·기능,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함
- 당해 「건축법」 규정 및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따라 야영장 시설 용도 건축물은 그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면서, 300㎡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함

야영장 시설의 예시



- 이용자들의 고급화 욕구와 사업자들의 수익성 극대화에 따라 점차 야영장내에 야영시설과 야영용 트레일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

가. 야영시설(글램핑텐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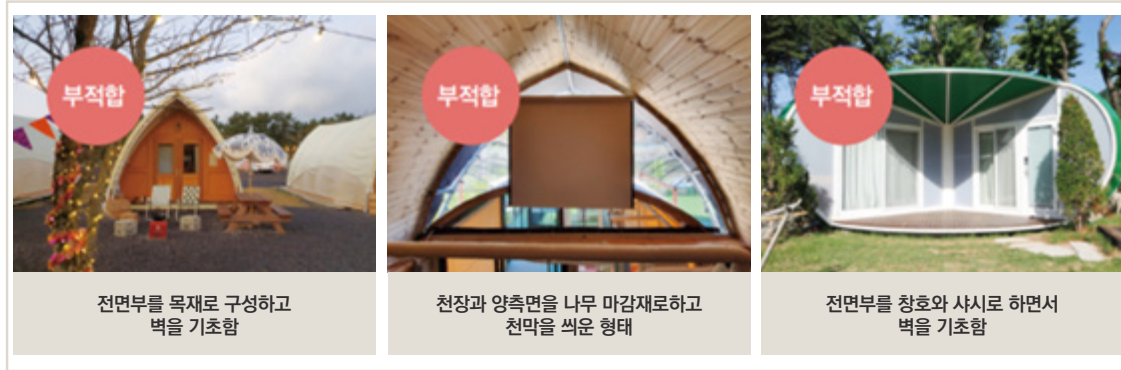
- 정의 |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야영장 시설의 종류
- 야영시설은 사업주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며, 이용자가 설치하는 천막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된 것이 아닌, 이동형 천막으로 상시 설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천막은 야영시설로 적용하지 않음



- 야영시설의 경우 시설간 3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하며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층 구조의 야영시설은 권장하지 않음
- 복층 구조의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재질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 야영시설의 일부 면을 천막이 아닌 목재나 석재, 금속재, 합성재등으로 벽을 구성하여 설치 할 수 없으며, 창호나 샤프시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로 오인될 수 있기에 부적합함



- 야영시설 내 화장실과 샤워실, 개수대등의 이용자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즉시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건축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물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야영용 트레일러

- 정의 |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야영장 시설의 종류
- 야영용 트레일러는 화재나 침수 등의 비상 상황 발생시 견인차량에 의해 즉각적으로 이동 조치가 가능하여야 하기에 견인 장치와 바퀴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함



- 야영용 트레일러가 견인장치와 바퀴를 갖추었다더라도 수도·전기·기타 시설(에어컨 실외기 등)로 인해 이동하기 위해 해체 절차가 필요한 경우나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과 연결 또는 인접하여 즉각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남



제2절 야영장업 연혁

[1] 주요연혁

- 1988 -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시행령 개정)
- 2005.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최초 추진
- 2007 -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사업 추진
- 2009. -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2012. -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캠핑장 레저 활성화방안 연구(문체부)
- 2013. -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5. - 일반야영장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4.10.28) *15.5.31까지 경과 조치
-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마련(「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5.11.3까지 경과 조치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79개소)
- 2016. - 미등록 영업 야영장 벌칙조항 시행(「관광진흥법」 개정, 15.2.3)
-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 추가(「건축법」 시행령 개정)
- 야영장 입지 신설, 보전관리(녹지)지역 허용(「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제법 개정)
- 야영장 시설의 종류 신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162개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10개)
- 2017.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115개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11개)
- 2018.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123개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15개)
- 2019. -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강화(「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3.4)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134개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12개),
- 야영시설 화재안전성확보 지원(88개소)
- 2000. - 야영장 수질검사 의무화 시행
- 2022. -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위생관리 기준 강화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2



제1절 야영장 업무체계의 이해

[1] 야영장업 등록업무체계

-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게 다섯 단계에 걸쳐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음
- 즉, ① 사업자는 용도지역별 야영장업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 한 후, 관리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허가(대상자에 한함)를 받아 ② 허가 기준에 맞게 시설설치(개별법에 의한 사전인허가 사항 기준 적용)를 한 후 ③ 영업 등록을 하여야 영업이 가능함
- 또한,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④ 안전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⑤ 이 과정에서 제도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시 법적 제재가 적용됨

야영장업 업무 추진 프로세스 및 주무부처

단계	구분	세부내용	주무과
입지확인	입지 기준 확인	용도지역별 야영장 입지기준 확인	건축관련 부서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건축관련 부서
	환경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관련 부서
	건축허가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관련 부서



※ 야영장 등록예정지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의 '산사태취약지역', (2026.2.1. 시행, 舊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붕괴위험지역', 「하천법」 제12조의 '홍수관리구역, 등일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이행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을 재난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시설설비	필수시설 설비 기준	공통기준	관광관련 부서
		개별기준 :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기타시설 설비 기준	놀이시설, 물놀이장, 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등	관광관련 부서



등록절차	신규·변경 등록신청	제출서류, 등록권자	관광관련 부서
	서류심사	구비서류, 결격사항 확인	
	현장확인	서류접수 후 3일 이내	
	등록처리	등록증 발급, 등록대장 관리 및 등록 후 안내사항	
	승계 및 휴업·폐업		



안전·위생기준 관리감독	안전관리규정	점검 주체, 점검표 구비, 체크리스트	관광관련 부서
	세부항목별 법적기준	소방, 전기, 가스, 급수, 화장실, 기타 시설물(놀이시설 등) 설치 기준	



위반사업제재	벌칙, 등록취소, 과징금	관광관련 부서
--------	---------------	---------

[2] 야영장업 등록절차 개요

- 야영장업의 등록업무는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의 소관사무로 등록에 관련한 업무 전단계가 관광진흥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야영장업 등록업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됨
 - 먼저, 등록기준에 맞춰 시설설비를 마친 사업자는 일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함
 - 등록신청을 접수받은 지자체 담당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함))는 서류심사 및 사업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함
 - 본 심사를 통해 미흡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반려를 하여 보완 후 재신청 함
 - 그렇지 않으면 현장 확인(3일 이내)을 통해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를 바탕으로 야영장 점검확인을 함
 - 현장 확인결과, 서류와 상이할 경우 등록신청반려를 하여 보완 후 재신청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증 발급됨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 이러한 등록업무의 세부내용을 업무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봄

단계	중점검토사항
등록신청 접수	■ 신규등록 야영장업 신규등록신청은 영업 개시 전에 신청하고 등록하여야 함 ■ 변경등록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서류심사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 서류)도 확인
------	---

현장확인	■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	--------------------------------------



등록처리	■ (신규등록)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 (변경등록) 변경사항 확인 후 4일 이내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	--

- 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이 명확히 없고, 시설물에 대한 시방서(소재 및 급·배수시설 포함)와 설치개요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지 않아서, 차후 등록 업무 진행시 현장 실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준하는 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에 대한 등록 여부를 놓고 혼란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야영장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지자체에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신청시 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에 대한 시방서(소재 및 급·배수시설포함)와 설계도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신규 및 변경등록

가. 신규등록

- 등록권자: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포함)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함(「관광진흥법」제4조)
- 주요 등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사업계획서(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운영계획 포함할 것)
 -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내국인의 경우, 외국인인 따로 규정: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의2호 참조)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가능)
 - 등록시 신고, 인·허가 의제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증명서류(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 야영장업 운영을 위해 타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 평면도 및 배치도(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할 것)
 - 시설별 일람표(→시행규칙 별지 제3조의2 서식 참조)
- 신청 시기: 야영장업 등록신청은 영업 개시 전에 신청하고 등록하여야 함

나. 변경등록

- 야영장업 등록 후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대상 및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또는 ‘부지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신청 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4] 서류심사

가. 신청서류

-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서류(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 서류)도 확인해야 함
 - 야영장의 입지 및 안전한 곳에 위치 여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등록청내 내부회의, 의견조회 등 활용)
 -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 이외 기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확인
 -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서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별표7])에 의한 설비 구비 여부
 -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나. 결격사유

- 관광사업의 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법 제7조)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동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때,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위 사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함

다. 조치사항

- 야영장업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받은 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 예를 들어, 개발행위 등이 가능하지 않은 입지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조성한 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 그 외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자에게 미충족 사항을 설명하고 보완 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5] 현장확인

- 확인 일정 : 서류 심사가 통과된 신청자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 야영장업 등록 처리기간은 7일임
- 점검 인력 : 야영장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에 건축, 환경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입지 위험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점검 할 수 있음
 - 이때,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함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검사)

-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은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해야 함(부록 111쪽 삽입)
- 조치 사항-신청반려: 서류의 내용과 차이가 있어 등록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불가사유를 설명하고 보완 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6] 등록처리

가. 등록증 발급

- 신규 등록의 경우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신규 등록 수수료(30,000원)를 징수함(법 제79조, 시행규칙 제69조 및 [별표23])
- 변경 등록의 경우 야영장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 확인 후 4일 이내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 변경 등록신청 수수료(15,000원)를 징수함(법 제79조, 시행규칙 제69조 및 [별표23])

나. 등록대장 관리

- 등록대장 관리: 등록기관은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자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보존하여야 함
- 등록대장에는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시설의 종류 및 1일 최대 수용인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도 함께 보관하여야 함

[7] 승계 및 휴업·폐업

가. 승계절차

- 야영장업을 양수한 자는 그 야영장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기존 야영장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 야영장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동조 제4항)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합병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동조 제1항)
 - 관광사업 시설(토지와 건물,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동조 제2항)
- 구비서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한 서류 및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 포함)를 첨부하여,
- 신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동조 제4항,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

- 야영장 사업자가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야영장업을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다만, 그 승계한 사업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 등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음(동조 제3항)

나. 휴업·폐업 절차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야영장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30일 이내 관할등록 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함(제8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 구비서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등록 완료한 야영장 사업자에게 제공가능한 정보

I. 정식 등록된 야영장 홍보사이트 안내

- 등록이 완료된 야영장에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등록야영장 포털사이트 “고캠핑(www.gocamping.or.kr)”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함
- “고캠핑”은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캠핑장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이용자에게 안전 및 시설 등에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등록이 완료된 야영장업이 미등록 야영장과 차별화를 두고 이를 이용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개별 홈페이지나 고캠핑 사이트 등에 정식 등록된 야영장임을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이를 통해 일반 이용객의 정식 등록된 야영장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등록된 야영장업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등록을 유도함

II. 야영장업 보험 가입 안내

-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9조)
-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보험가입시 보상한도는 대인 1명당 사망의 경우 1억원, 대물은 1사고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증서에 포함되어야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상한도 권장_1억 5천)
※ '24.7월 야영장이 재난의 유형(시설)으로 포함됨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상의 적정 보상한도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
- 보상한도의 기준과 사업부지의 면적, 면(사이트)의 수, 편익시설(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설치 규모, 체육시설(물놀이장, 놀이시설) 설치 유무 등이 야영장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신청서 작성시 기술한 내용과 일치하게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야합(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와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 한도는 부록 참조)
- 등록증 교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인 야영장 전용 보험상품(보험종목코드 CMP)의 ‘재난 안전의무보험가입관리코드’(영문, 숫자 혼합 17자)를 수령하여 보험가입

III. 야영장업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안내

- 사업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으며, 화재나 안전사고 등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고캠핑 사이트 등에서 ‘야영장업 안전관리 매뉴얼’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사업자 및 관리자가 이를 활용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함
- 뿐만 아니라 야영객의 안전한 야영 활동을 위하여 이용객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해야 함

제2절 야영장업 입지

-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입지'사항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음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내지 별표22에서 확인 또는
 - ②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도지역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통해 확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제3항)

용도지역별 야영장 입지기준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입지가능 여부	조례확인 필요여부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	×
		2종전용주거지역	×	×
		1종일반주거지역	△	○
		2종일반주거지역	△	○
		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	×
농림지역*		농지법, 산지법, 초지법	△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별법**에서 개발행위 제한	×	×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관련부서 확인 필요)

** 「자연공원법」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예1) 입지가가능여부(△), 조례확인 필요여부(O)

→ 조례에 따라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거나, 조례에 따라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의한 지역

→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 확인 필요

예2) 입지가가능여부(O), 조례확인 필요여부(X)

→ 국계법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한 지역

→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에 상관없이 입지 가능

예3) 입지가가능여부(X), 조례확인 필요여부(X)

→ 국계법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은 지역

→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에 상관없이 입지 불가

■ 이때, 입지기준 상 야영장업이 허용된 지역이라는 의미는 해당 지역에 야영장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님

- 즉, 해당 지역에 입지한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에 따라 형질변경(개발허가)을 거쳐 지목을 변경해야만 야영장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음

- 뿐만 아니라 환경허가 기준 등도 고려사항이 되므로, 입지기준에 해당한다고 야영장 허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반대로, 위의 입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면 가능할 수 있음

■ 이처럼 야영장업을 하려면, 관리청(감독청)으로부터 (1)개발행위허가(도시계획시설포함, 재량행위)를 받아서 허가 기준에 맞게 공사를 한 후 (2)영업등록(허가 또는 신고, 기속행위)을 하여야 영업이 가능함

■ 따라서 야영장업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도가능한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나 환경허가 대상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 2019. 3. 19.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3. 19.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3. 19.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3. 1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1 개정 2019. 3. 1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3 개정 2019. 3. 19.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7. 2. 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9. 3. 19.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8 개정 2017. 2. 3.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9 개정 2019. 3.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당사항 없음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3





제3장 야영장업 관련 법령

제1절 「관광진흥법」

제2절 「관광진흥법」 시행령

1. 공통기준
2.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3.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4. 등록 특례기준

제3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 화재예방기준
2. 전기사용기준
3. 가스사용기준
4. 대피관련기준
5.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6. 위생기준

제1절

「관광진흥법」

-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3호다목에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제4조(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충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 제78조(보고·검사)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3조(벌칙) ②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절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 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 관련)

4.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것
-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21.8.10)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줄 것
-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 줄 것
-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줄 것
-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5)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4호다목)에 맞춰 시설설비 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이에 관련 업무 담당자는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토대로 각각의 등록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야영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우선 개발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부지여야만 함
- 또한 해당 부지는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성이 없는 곳이어야만 함
- 만일 자연재난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야영장업 설치·운영을 제한함
 - 자연재난 취약지역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의 '산사태취약지역', (2026.2.1. 시행, 舊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붕괴위험지역', 「하천법」 제12조의 '홍수관리구역, 등을 말함
- 사업장에서는 위험구역에 대한 사전 고지를 위해 안내물을 게시하여 이용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며,
- 위험구역에 대한 이용 제한을 위하여 야영 한계선을 설정하여(난간 설치 등)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
- 또한, 해당 구역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TIP 입지 적정성 여부 확인방법

개발행위허가서의 입지(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등), 기반시설계획(진입로,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 등), 안전 및 방재계획(배수시설,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침수위험, 사면안정, 연약지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등) 등을 검토하므로 입지조건 적정성 여부는 인허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함

나. 시설 배치도, 사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란 야영장 입구, 관리동, 취사실, 화장실 등과 같이 야영장 내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의미함
- 위와 같은 장소에는 이용객이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게시되어 있어야 함
- 게시해야 하는 내용물은 야영장의 시설배치도, 사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비상연락망, 대피소 및 소화기 위치 등이 있음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것

- 전체 야영장 내에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송 장비(확성기 등)를 구비·설치하여야 함
- 즉,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M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함(안전위생기준 참조)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절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관리실, 편익시설(야영시설(글램핑 텐트를 포함한다), 야영용 트레일러 등 포함) 등 야영장내 모든 시설물에는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어야 함
- 야영장 내 소화기는 소화기 용량별 분사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비치해야 함
 - 야영용 천막 2개소(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적절히 배치
 -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알맞게 설치·유지해야 함(소방시설법 제9조의4,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4, 별표5)

- 소화기는 사용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 소화기에는 “소화기”, 마른모래에는 “소화용모래” 등 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함(「소화기구의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18-14 호)제4조 제1항 제6호)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은 교체해야 함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는 10년임(법 제9조의5 및 시행령 제15조의4)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사업자는 비상시 이용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확보해야 함
- 지자체는 재난에 대비하여 “임시주거시설”(예, 체육관, 학교, 마을회관 등)을 마련하여 비상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야영장 부지와 가까운 “임시주거시설”을 문의하여, 이를 대피소로 이용하는 것을 권장함
-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야영장 내 각 위치로부터 안전이 확보된 장소(대피소)로까지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함
- 대피소나 대피로를 확보하면 이를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함(안전위생기준 참조)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자연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해야 함
-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안전위생기준 참조)
- 이때, 소규모 등으로 관리요원을 별도로 둘 수 없는 경우 야영장 개장 동안에는 사업자가 상주해야 함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야영장에 설치가능한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음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 분의 10 미만일 것

- 「건축법」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언급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의 종류에는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이 있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2. 수련시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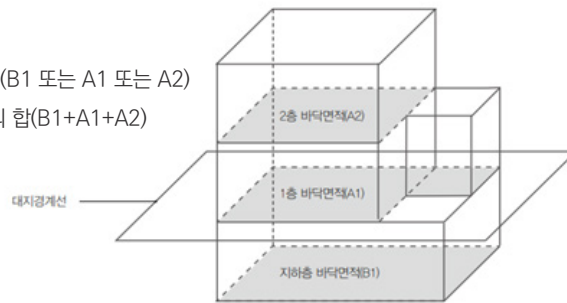
TIP 면적 용어에 대한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및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즉, 건축물을 실제로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함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건축물을 지었을 때(2층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말함

바닥면적은 각 층면적(B1 또는 A1 또는 A2)

연면적은 각 층 면적의 합(B1+A1+A2)



※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서 말하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바닥면적 합계’란 야영장에 설치되는 모든 건축물 각각의 바닥면적을 더한 것을 말함.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 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음
 -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함 (국토계획법 제36조)
- 보전녹지지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함(동법 시행령 제30조)

「하수도법」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3.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수

TIP 보전관리(녹지)지역의 야영장업 운영가능 여부

- '16.03.22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보전관리(녹지)지역에도 야영장업이 가능하게 됨
- 당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시행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된 지자체의 경우 해당지역내에서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함
- 즉, 개정 이전에는 보전관리(녹지)지역의 경우 수련시설 입지기준을 적용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개정 후 야영장 입지기준이 적용됨

[2]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 사업장에서는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 야영지 규모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보행 중 텐트 줄에 걸려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 예방 및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천막 공간(1개당 15㎡ 이상 확보) 외에 텐트 간 안전 이격거리가 있음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1) 하수도 시설

- 야영장 종류(일반, 자동차야영장)를 불문하고 하수시설은 갖추어야 함

「하수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야영장내 부대시설(화장실 등) 사용을 통해 발생한 하수 및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법 제34조)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규모 등은 오수발생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5-133호)을 참조
- 다만, 「관광진흥법」시행령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가 사용 개시된 배수구역 안에 야영장이 위치한 경우 토지소유자·관리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배수설비 설치하려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의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및 제27조)

2) 화장실

- 야영장에 공중화장실 혹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에 따라야 함
 -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함(제2조)
 -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하며(제2조),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을 말함
- 따라서 일반야영장에는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나, 자동차야영장에는 불가능함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안전 위생기준 참조)
-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 차량 진입이 야영장 입구까지 가능하여야 함

[3]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가.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의 야영 공간은 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야영용 천막, 야영용 트레일러 등)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
- 이 공간의 규모는 차량 1대당 50㎡이상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야영장에서는 야영장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야영장 내 차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 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 것

1) 상하수도 시설

- 야영장의 부대시설(화장실, 샤워실, 조리실 등) 중 수도를 이용하는 시설은 「수도법」에 따라 공급신청을 해야 함
- 야영장 사업자가 전용상수도 설치를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52조)

2) 전기시설

- 야영장 내 전기시설은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야영장내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함
 -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임
- 또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중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함(안전·위생기준 및 전기생활용품법 제2조)

3) 화장실

- 자동차야영장의 공동화장실 시설기준은 일반야영장과 동일함
- 다만,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필수시설인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함(법 제10조의2)
 - 간이화장실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의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 화장실임

4) 취사시설

- 취사시설은 급·배수 등 공급설비 및 개수대, 조리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관련 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 액화석유가스 관련법령, 도시가스사업법령 등)에 따르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5) 가스시설

- 야영장의 가스시설 설비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중 가스 사용 기준을 따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 야영장 내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함
 - 관련 법령에는 설치에 관한 기준 외에도 가스용품과 가스용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함(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 액화석유가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는 등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사용시설을 설치해야 함(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시행규칙 제69조 및 별표20))
- LPG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저장소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함(동법 제8조)
- LPG용기는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함(고압가스법 제17조)
 - “㉮”자 표시 및 합격증명서

6) 급수시설 및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기준

- 야영장에서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소관부처: 환경부)을 준수해야 함
- 또한, 야영장 사업자가 화장실, 세면장, 탕비실 등 야영장 부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7조 제1항, 제2항)
- 다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동법 제7조 제1항 단서)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개발행위허가시 국토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규모에 따라 차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5천㎡ 미만은 4m, 5천㎡ ~ 3만㎡ 미만은 6m)
- 그러나 야영장 설치 특수성(계곡, 산지 등 외진 곳에 위치)을 고려할 때 당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문체부와 국토부의 부처간 협의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즉, 일정구간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4] 등록 특례기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 특례기준이 적용됨
 - 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 ②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 등록 특례기준 항목별 세부내용은 앞의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함(시행규칙 제69조 및[별표20])

등록 특례기준

구분	내용
공통기준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일반야영장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	■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제3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4조(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4.야영장업

- 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나. 시설의 종류
다. 1일 최대 수용인원

- 제5조의2(야영장 시설의 종류) 영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1)(사)에 따른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3. 4.〉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 야영장 등
2. 편의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컴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물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제18조
(보험의 가입 등)**

-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19. 3. 4.>
- ⑦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3. 4.>
1.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의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⑧ 제7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는 하나의 사고로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 3. 4.>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7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3.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피해자 1명당 제7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7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8조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구 분	개정 내용	비고
1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제출하고 (제2조제4항 제3호의4),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별표7)제6호	3의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의 등록만 해당한다)	2019.3.4. 시행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1.1. 시행

2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제18조제6항)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 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019.7.1. 시행
3	야영용 트레일러의 형태 명확화 (별표1)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019.3.4. 시행
4	야외 소화기 비치 시 보관함에 수납 (별표7)제1호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5	야영시설(글램핑텐트)·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별표7)제1호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6	야영시설(글램핑텐트)의 천막 등은 방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별표7)제1호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7	야영시설(글램핑텐트)·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 (별표7)제1호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8	야영시설(글램핑텐트)·야영용 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및 펠릿난로 사용 금지 (별표7)제1호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9	야영장 안전교육 강화 (별표7)제5호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1. 시행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제28조의2관련)**

1. 화재 예방기준

-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3) 삭제 <2019. 3. 4.>
-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아. 야영장 내 숲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자.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야영용 자동차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 사용 기준

-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야영용 자동차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피 관련 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아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더.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이불·베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출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조해야 한다.

사.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출청과 수건을 세탁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에 등록된 야영장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을 준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즉, ‘야영장업 사업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며,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관광진흥법」상 명확히 하고 있음(법 제20조의2)
- 「관광진흥법」에서는 야영장업의 등록기준보다 안전·위생기준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함
- 따라서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야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절에서는 동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규정 내용 그대로를 이용해 항목별 추가설명, 관련 예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정내용을 명확히 이해토록 하였음
- 야영장업 등록시 등록기준이 적용되고, 등록 이후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사후점검이 이루어진다고 「관광진흥법」을 원칙적으로 해석하여 야영장 사업자는 등록시 등록기준에 맞추어 최소한의 시설설비만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는 실정임
- 그러나 안전·위생기준은 야영장내에서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며, 등록기준과 분리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야영장업 시설설치를 할 때부터 안전·위생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 안전한 야영장이 되도록 안내함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방관계법령

구 분	해당법령	주요 내용
소방기본법령	소방기본법·영·시행규칙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법
소방시설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영·시행규칙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
화재예방안전법령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
위험물안전 관리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영·시행규칙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 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영·시행규칙 등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분류 및 표지 방법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함
다중이용업소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영·시행규칙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임
기타소방관련 규정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소방관련건축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배연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함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화재 안전기준 (NFSC)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201)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함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

- 야영장내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사용할 수 있음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는 안전인증 표시인 KC마크가 새겨져 있음
 - KC마크는,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5개 부처(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일해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야영장내의 모든 전기용품(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내의 물품 포함)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텐트 안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에 한해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는 사용 가능함
 - 사업주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고정형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은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로 사용하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 즉,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총 1100와트 초과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은 텐트 안에서 사용 할 수 없음을 이용객에게 안내해야함
 - 야영장내에서 눈에 잘 띄는 곳(관리동 혹은 화장실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야영장 출입구 쪽 게시판에 기재할 수 있음
 - 또한 캠핑장 개별 홈페이지나 고캠핑 등 사이트에도 기재하여 이용객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함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야영장의 배치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소화기 개수나 비치방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야영장 개별 특성에 맞게 비치하면 됨
- 즉, 관리실, 편의시설(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포함) 등 시설물 내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야영지에는 소화기 용량별 분사거리를 고려하여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함
- 이때 유의할 것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는 10년이므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함

TIP 소화기 관리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 수시 점검을 통해 파손이나 부식, 노후 및 압력저하계 정상여부(녹색)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받기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함



소화기 설치의 좋은 예(배치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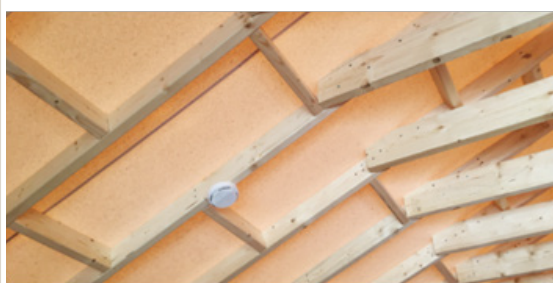


소화기 설치의 좋은 예(소화기 함 및 표시)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1)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된 시설
- 2)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시설

- 1)의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글램핑텐트를 말하며, 2)의 야영용 트레일러는 일반적으로 야영용 트레일러 등이 해당됨
- 야영장내의 이러한 모든 시설 내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 손전등을 비치해야 함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글램핑텐트) 내 연기감지기 설치의 좋은 예



야영용 트레일러 내 연기감지기 설치의 좋은 예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글램핑텐트) 내 비상손전등 설치의 좋은 예



야영용 트레일러 내 비상손전등 설치의 좋은 예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출입구가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갖춘 경우의 예로, 벨크로(일명 찝찌이)가 있으며,
-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천막의 출입구가 지퍼 같은 경우 불이 났을 때 지퍼가 녹아 탈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바. 야영장 내 숲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야영장내 숲 및 잔불처리를 위해 주변에 화재 위험이 없는 곳에 별도의 처리 시설(예, 재수거함 등)을 갖추고, 소화기 및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해야 함



숲 및 잔불처리 시설 설치의 좋은 예
(재수거함 옆 소화기 비치)



숲 및 잔불처리 시설 설치의 좋은 예
(재수거함 옆 소화기 및 방화사 비치)



숯 및 잔불처리 시설 설치 장소의 잘못된 예
(쓰레기통 옆 위치 및 소화기 미비)



숯 및 잔불처리 시설 설치 장소의 잘못된 예
(LPG가스통 옆 위치 및 소화기 미비)

사.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다른 야영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담배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국립공원 내에는 모든 지역이 금연구역임

금연구역 지정 법령

- 산림인접지역(산림보호법 제34조)
- 자연공원(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
-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 그외 지자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흡연구역의 잘못된 예(텐트 바로 옆 위치)



흡연구역의 잘못된 예(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흡연구역 설치의 좋은 예(별도의 흡연실 마련)



금연구역 지정의 좋은 예(금연스티커 부착)

[2] 전기사용기준

가.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관계법령

구 분	해당법령	주요 내용
전기사업법령	전기사업법·영·시행규칙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법
전기생활용품 안전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영·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기공사업 법령	전기공사업법·영·시행규칙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함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야영장내 모든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함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은 누전, 합선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음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는 안전인증 표시인 KC마크가 새겨져 있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3 참조

분류	품목
전선 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통신 및 데이터 전송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용 스위치	1) 스위치 2)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 것만 해당된다.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비고: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1) 퓨즈 2) 차단기 비고: 교류전압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비고: 정격출력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절연변압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전기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온수기 전기 냉장·냉동기기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전기기기	팬, 레인지 후드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그 밖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한다.
전동공구	대상 없음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 없음
정보·통신·사무기기	직류전원장치(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전지 충전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고, 정격출력이 1kVA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그 밖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조명기기	1) 램프홀더 2) 일반조명기구 3)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4) 안정기내장형 램프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리튬이차단전지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및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누전으로 인한 재해가 예상되는 전로에는 필수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이때,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외에 설치할 때는 방수형 단자 속에 넣어 설치해야 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2011.12)' 참조)



단자함 설치의 좋은 예(방수형함, 설치 높이, 위험 표시)



단자함 설치의 좋은 예(방수형함, 설치 높이, 위험 표시)



야외에 설치되는 콘센트의 잘못된 예(낮은 위치)



설치 장소의 잘못된 예(수도 옆)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급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야영장내 보행로상에는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어야 함
 - 야영장내 설치되어 있는 전선뿐 아니라 야영객이 야영 중 사용하는 전선이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순찰을 통해 살펴봐야 함
 - 야영객이 전선이용시 주로 전선(릴선)을 감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선 자체의 저항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누전과 합선, 그리고 감전 등의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2011.12)' 참조)

TIP 실내 혹은 실외에 따라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다른가요?

- 야외에서 사용가능한 전선과 그렇지 않은 전선이 있으므로 야영장 관리시 반드시 이에 관하여 설치기관 혹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확인을 한 후 설치하여야 함

[3] 가스사용 기준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스관계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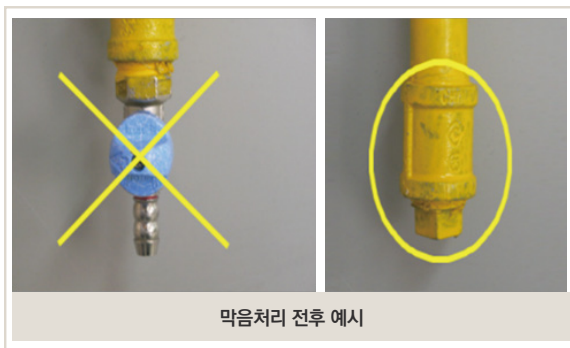
구분	해당법령	주요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와 공공 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함
액화석유 가스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 총천, 저장, 판매,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함
도시가스 사업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 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함

TIP 합격한 가스용기인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를 합격한 용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5에 따라 각인을 용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LPG용 강제용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기 손잡이(프로텍터)에 각인을 실시하고 있음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 막음조치란 연소기를 철거한 후에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함
- 막음조치는 가스시설의 설치·철거와 같이 LPG판매점, 도시가스사, 가스시공사 등 전문가에 의뢰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 가스배관 막음(막음조치)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막음조치를 실시한 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가스누출 여부 점검 등 시설의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함



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흔히 LPG 가스라고 함
- LPG 가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 이때, LPG 가스 외에 부탄가스, 화로 등 산소 연소를 동반하는 화기사용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도록 권고함
 - 액화석유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스 누출시 통풍이 안되는 장소나 환기가 불량한 장소일 경우 체류될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우려가 되므로, 용기보관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누출시 체류가 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0 제1호가목2)

- 다)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1) 용기집합설비(별표 13 제2호 단서에 따라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 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kg 이하는 가스 무게가 아닌 LPG용기에 표시된 총 저장능력기준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13kg 이하 LPG용기는 개인 운반이 가능함
- 이때, LPG가스 사용에 있어, 실내보관 금지 문구와 안전사용요령이 표시된 용기를 가스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안전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



[4] 대피관련 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전체 야영장내에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등 적절한 방송 장비를 구비·설치할 것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이 야영장 입구까지 가능하여야 하고, 적치물이나 고정된 진입금지 펜스 등의 방해물이 없어야 함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안전행동 요령, 비상연락망, 대피소 및 소화기 위치 등을 게시한 전체 게시판 및 부분 게시판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적재적소에 설치·부착함
- 이용자가 안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사항인 만큼 이를 기재한 게시판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입구에 설치하고, 야영장내에서 이용객이 많이 접하는 장소인 관리동이나 화장실 등에도 설치하도록 권장함
- 실제 운영되는 야영장의 경우 안내게시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많음. 안전 및 사고대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빠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함
- 게시판의 내용을 가리는 적재물이 놓여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동 혹은 제거가 필요함





게시물 관리의 잘못된 예(게시물 앞 적재물)



게시물 관리의 잘못된 예(게시물 앞 적재물)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 태풍, 홍수,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캠핑장 운영중지 및 이용객을 대피시켜야 함
- 기상특보 등 비상 상황 시 이 규정을 근거로 야영객 안전 확보를 위해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가능하니, 이에 불응할 수 없으며 강제퇴거에 따라야 함을 야영객에게 안내할 것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 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야영장의 입지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구호설비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
- 예. 물가 근처에 소재한 야영장인 경우 필요한 구호설비로써 구급용 조끼, 구명환 등이 있으며, 산에 소재한 야영장인 경우 골절부목 등이 있음



구급약품 비치의 좋은 예



구조설비(구명조끼) 비치의 좋은 예



자동제세동기(AED) 비치의 좋은 예

[5]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이용자의 이용수칙의 주요 내용

- 이용수칙의 주요 항목에는, ① 입장 및 퇴소시간 ② 시설사용료 ③ 이용장소 ④ 자동차 운행 주의 ⑤ 소음 ⑥ 위생 ⑦ 동물 ⑧ 화재와 사고 ⑨ 종교행위 등 금지 ⑩ 유실 또는 피해 ⑪ 긴급사태 ⑫ 전기시설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사업자는 이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보완하여 개별 이용수칙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요 사례를 통해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을 파악하고, 야영장 소재 위치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이격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숲속야영장의 경우 최소 6m의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음(영 제9조의3 및 별표3)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캠핑장 및 주말 장소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말주택은 주말주택 사이트의 경계로부터 최소 2.5m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하며 텐트, 캠핑차량 또는 주말주택 사이는 최소 2m의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 야영장 허가기준인 「야영용 트레일러 사이트 및 개발관리법 1960」에서는 카라반 혹은 가연성 구조물 사이트 경계의 3m 내에 배치하여야 하며, 카라반 간에는 6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영국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면제권자의 의무이행기준에 근거하면 야영용 트레일러와 텐트간격은 최소 6m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이트 구분 줄 설치의 잘못된 예(줄 고정상태)

바.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내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해야 하며, 게시물의 내용 확인을 방해하는 적재물이 놓여 있어서는 안 됨



위험구역 안내 표지에 대한 좋은 예

위험구역 안내 표지에 대한 좋은 예

위험구역 안내 표지 설치에 대한 잘못된 예(방해물)

난간 관리에 대한 잘못된 예 (파손된 시설물)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배수로의 덮개 미설치 시, 보행자가 발을 헛디뎈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간혹 차량의 바퀴가 빠지는 경우가 있음
- 안전덮개를 설치 후 배수로가 쓰레기 및 이물질로 인해 배수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가 필요함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 야영장은 국도, 지방도로 등의 차량주행 간선도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거나,
- 도로 인접부분에 안전시설(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도로와 격리시켜야 함

「도로법」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 |
|--------------------------|-------|
|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 5. 시도 |
|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 6. 군도 |
|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7. 구도 |
| 4. 지방도 | |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CCTV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을 위해 설치가 가능함(제25조 제1항)
- 설치시 이용객이 CCTV 설치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동조 제4항)
- 또한 야영장 입구 등에 설치하여 야영객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동조 제2항),
- 이때,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고, 개인 정보가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동조 제6항)

차.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용 안전·위생 점검 체크리스트는 업무매뉴얼에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점검하고,
- 그 점검결과를 안전·위생 점검표(업무매뉴얼 수록)에 기재하여 반기별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는 당해 점검표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카.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용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접근 금지 표시 혹은 위험 안내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후 보수, 제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함



시설물 관리의 잘못된 예(파손된 시설물 방치)



시설물 관리의 잘못된 예(파손된 시설물 방치)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의 교육 내용과 시기, 장소 등은 매년 차이가 있으며, 별도 공문을 통해 실시계획을 통보 예정임

파.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규모 등으로 관리요원을 별도 둘 수 없는 경우 야영장 개장 동안에는 사업자가 상주해야 함

하.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야 함

거.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시속 30km)보다 낮은 속도임



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 놀이시설(무동력 시설만 해당)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 등)

더.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종류에는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이 있음
 - 폭발물류 : 폭죽, 연막탄, 화약류, 조명탄 등
 -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및 휘발류·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 유독성 물질 : 표백제, 독극물 등
 -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등

[6] 위생기준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바닥재는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석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산업폐기물 폐골재 등의 사용을 금지함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야영장내 식수는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토록 함
- 즉, 각 지자체 환경관리보건국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해당 검사결과를 이용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시하여, 음용가능여부를 안내하도록 함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야영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해야 하며,
- 또한 악취 및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내·외부 소독을 해야 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라.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간이화장실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 화장실로,
- 따라서,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필수시설인 자동차야영장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함

마.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이불·베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흠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조해야 한다.

사.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흠청과 수건을 세탁해야 한다.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제4장 야영장업의 안전점검 및 단속

제1절 야영장업 안전·위생점검 업무

1. 사업자의 점검의무
2. 지자체의 점검의무
3. 소방안전 점검표

제2절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절 야영장업 안전·위생점검 업무

[1] 사업자의 점검 의무

-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함
- 점검표는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안전·위생기준5호 차목)
- 주요 점검사항은 동 업무매뉴얼 '부록5. 야영장업 시설물 안전점검표(사업자)' 참조

[2] 지자체 점검 의무

- **점검주기** 등록권자(지자체 업무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특히, 재난·사고의 위험이 크거나 관리상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제78조 참조)

「관광진흥법」 제78조 (보고·검사)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지자체 야영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부록6. 야영장 안전점검표(지자체용))

점검 항목	주요 내용
화재 예방기준	야영용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금지 및 1100와트 이하 전기용품만 사용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글램핑 및 트레일러의 경우 안전설비* 구비(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 손전등 등
	글램핑 천막 방염 제품 사용 여부 및 천막 출입구가 비상시 출입이 용이한지 여부
	글램핑 및 트레일러 간 3m 이격거리 확보
	글램핑 및 트레일러 내에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 설치 금지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은 별도 공간에 마련.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폭죽, 풍등의 사용 및 판매 금지

점검 항목	주요 내용
전기 사용기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받은 전기용품 사용 여부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예방을 위해 적정 높이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 여부
	옥외용 전선 적정 설치 여부 (적정 깊이 매설 또는 적정 높이 설치, 피복 손상 여부 등)
가스 사용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 설치,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 및 용기 사용 여부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할 경우 13kg 이하만 허용하고 안전 사용 안내 여부
대피 관련기준 대피	긴급방송시설 또는 메가폰(엠프 최대출력 10와트, 가청거리 250m 이상) 1대 이상 구비 여부
	야영장 진입로에 적치물, 방해물 비치 금지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정보 게시판 설치 여부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
	자연재난 대비 대피계획 수립 여부 (이용객 안전 우려 시 야영장 이용 제한 및 대피)
	구급약품, 구호설비 및 환자 긴급 후송대책 수립 여부
	정전 대비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치, 비상 손전등 구비 여부
	정전 대비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치, 비상 손전등 구비 여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표지 설치, 접근 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조치 여부
	낙석, 붕괴, 추락, 낙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방지시설 및 위험 안내표지 설치 여부
	집중호우 대비 야영장내 배수시설 정상작동여부, 이물질 제거, 안전덮개 설치 등 여부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 확보(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야영장 입구 포함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 설치하고 이용객에 고지 여부 (설치 불가능할 경우 관리요원이 야간 순찰 실시)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시설물 대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2년 이상 보관
	각종 비상상황 대비 관리요원 상주 여부
	체육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 안전기준 준수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연 1회 실시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시설의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 상태
	'공중화장실' 법에 따른 화장실 설치 여부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침구(요, 이불, 베개 등)의 환청과 수건을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세탁하는지, 일광 소독 및 수시 건조 여부
	환기 및 조명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기타	불법촬영장치 유무(화장실, 샤워실)

- **조치사항**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 개선을 명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관광농원과 야영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안전점검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안전점검을 개별적으로 수검하는 데 있어 시간적,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 하는 바, 지자체 야영장업 소관과와 관광농원 소관과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을 일원화 하여 추진 요망

**「농어촌정비법」
제88조(지도·감독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현장 점검**에 앞서, 해당 야영장의 등록시의 시설 및 규모를 파악 (면 수, 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설치 수, 등록 지 번과 면적 등)후에 홈페이지 또는 예약 사이트등에서 실제 운영중인 시설과 규모를 비교·확인하고 현장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소방안전 점검표

점검결과 : ● 안전, ✕ 불안전, ○ 해당없음 중 택1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모든 소방시설은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소방용품은 제품검사를 받은 용품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모든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용품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소화기는 법령에 따라 적정 수량이 맞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소화기는 10년 이하의 제품입니까?		
손상·부식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소화기의 압력 지시계가 정상 범위(녹색)에 있습니까?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전용 누전 차단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비상 손전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비상 손전등은 작동됩니까?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의 천막(텐트, 야영시설(글램핑텐트) 등)은 세탁 가능으로 방염처리된 제품입니까?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격필증 혹은 결과 통보서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숫 및 잔불 처리 시설에 1개 이상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숫 및 잔불 처리 시설에 방화사 또는 방화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숫 및 잔불 처리 시설 주변에 위험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흡연구역이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 혹은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 트 이상이면서 가청 거리가 250m 이상 이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고 있습니까?		
야영장 진입로에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적치 물이나 방해물이 있습니까?		
야영장의 안내 게시판에는 소화기 위치도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고 계십니까?		

제2절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 「관광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서는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폐쇄조치·과징금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35조 제1항은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시설·운영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야영업자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등록 이후 동법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제1호)
 -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제1호)
 - 야영장을 양수한 자가 기한(1개월) 이내에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 야영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제3의2호)
 - 야영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제4의2호)
 - 제35조 제3항에서는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동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음(아래 '표' 참조)
 -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영 장을 영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36조 제1항)
 -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다만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그 사업자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함(법 제36조 제4항)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야영장의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1/2내에서 가 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법 제37조 제2항)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기간 위반시 : 80만원
 -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200만원
 - 야영장업을 양수 후 승계신고를 아니한 경우 : 120만원
 - 「관광진흥법」 제20조의 2에 규정한 야영업자의 안전·위생사항을 위반한 경우 : 200만원
 -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서류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200만원
- 벌칙: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음(법 제83조 제2항)
- 과태료: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거나 관광사업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 1차위반: 30만원/2차위반 60만원/3차이상위반 100만원(법 제86조 제2항제2호)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행정처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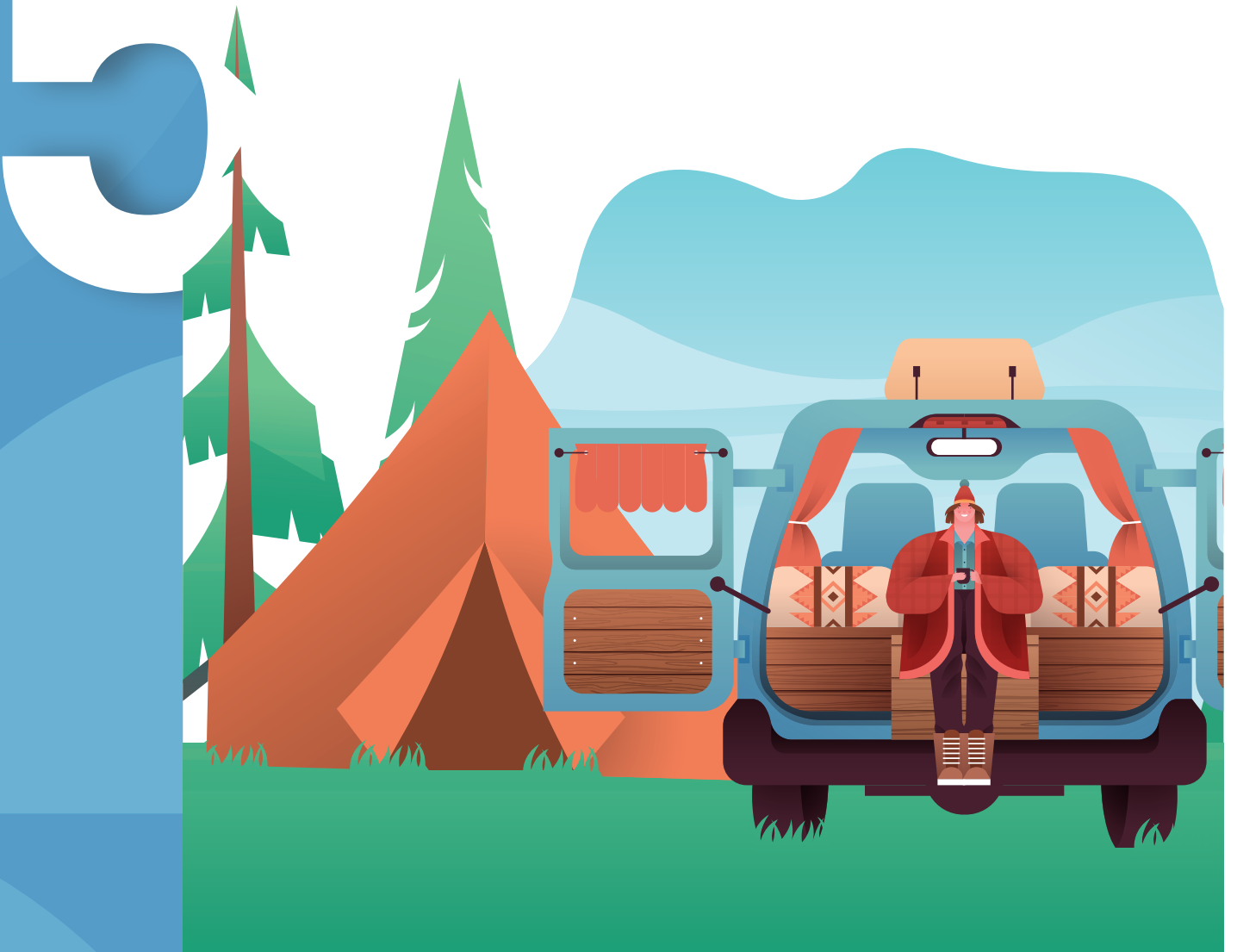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폐쇄 명령)			
바. 법 제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아. 법 제 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러.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위반사항	과징금액
1. 법 제4조(등록) 위반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만원 80만원 200만원
2.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120만원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4.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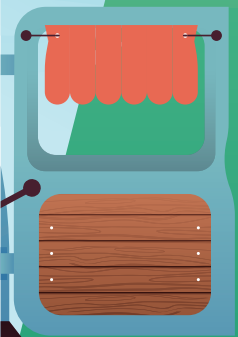


제5장 주요 민원사례 Q&A

제1절 주요 민원 답변 사례 요약

제2절 주요 민원 답변 사례

1. 입지 관련 Q&A
2. 시설설비 관련 Q&A
3. 등록절차 관련 Q&A
4. 안전·위생점검 관련 Q&A
5. 보험 관련 Q&A
6. 기타 Q&A



제1절

주요 민원 답변 사례 요약

주요 민원 사례 목록

구분	질문	답변
1 입지	(1)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유형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야영장 시설설치 가능지역 확인 후, 용도지역관련 조례 개정 여부 확인
	(2) 하천부지 내에서 야영장업 운영이 가능한지?	「관광진흥법」령에서는 하천부지 내 야영장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 없음
	(3) 부지내 기 설치된 시설을 이 용하여 야영장 편의시설로 제공 가능 여부	기 설치된 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야영장 시설'이어야 하며, 야영장 내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함
	(4) 야영장에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설치 시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야영장 시설의 종류' 2. 편의시설 중 야영시설에 해당하며,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는 시설'로 정의
	(5) 야영시설(글램핑텐트)을 복층 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지?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야영장 시설의 편의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재질,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6) 야영시설(글램핑텐트)에서 1100와트 이상 전기 사용이 가능한지?	야영시설(글램핑텐트)이나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 등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시설은 별도로 전기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7) 야영용 트레일러를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야영용 트레일러는 '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음
	(8) 야영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야 하는지?	「관광진흥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야영장이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의료시설과 먼 거리에 위치함을 고려할 때 AED 설치를 권장함
2 시설 설비	(9)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2 시설 설비	(10)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차이 및 시설 등이 혼재될 경우 등록해야 할 야영장 종류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분리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분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하되, 자동차를 야영장비와 함께 위치시킬 경우 자동차야영장업 기준에 준하도록 권장
3 등록 절차	(11) 야영장 시설 중 야영장 등록기준 외의 시설(편의·체육시설)의 설치기준	해당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예, 체육시설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트램폴린 - 「관광진흥법」의 테마파크업 관련 조항 등)
	(12) 단기간 행사를 목적으로 야영장이 제공될 때 야영장업 등록여부	행사에 부수적으로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반복성, 수익성, 기간에 따라 분류하여 등록여부 결정
	(13) 펜션내 야영장 시설 설치 시 야영장업 등록대상 여부	펜션, 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야영장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받거나,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타 업종의 홍보 또는 고객유치 등의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야영장업 등록 필수
	(14) 야영장 인근부지 시설을 야영장 편의시설로 이용 가능여부	야영장 등록 시 특례기준에 해당할 경우 화장실,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등을 야영장업 내에 갖추지 않고, 인근부지의 시설을 이용 가능. 등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 부지 내에 갖추어야 함
	(15) 야영사이트 없이 야영장 등록 가능 여부	시행규칙 별표1.야영장 시설의 종류 중 기본시설 없이 야영장 등록은 불가
	(16) 진입로에 관한 규정의 기준	야영장의 설치 특수성(계곡, 산지 등 외진 곳에 위치)을 고려하여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령」상 차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야영장 등록 특례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 특례기준이 적용 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②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18)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9) 야영장업 휴업 신고 후 영업 재개 시 별도의 신고 절차 필요한지?	휴업기간은 휴업 신고 시 제출한 휴업 통보(신고)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의 영업재개 신고는 불필요함
	(20) 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야영장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시기, 장소 등은 별도 공문시행
4 안전· 위생 점검	(21) 야영용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적합 의뢰시험은 어느 기관에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의뢰시험을 수행하며, 민간기관 중에는 KOTITI, FITI, KATRI 등이 가능 (*19.6월기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안전· 위생 점검	(22)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천막등의 방염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①연소시험(세탁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을 말함
	(23) 야영시설(글램핑텐트)의 방충망도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야영시설에 방충망이 야영용 천막의 주재료가 아닌 일부분에 한정하여 환기 및 해충방지의 목적으로 설치될 경우 방염성능기준 대상에서 제외함
	(2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마목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란 무엇인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말하며, ‘벨크로’ 형태의 출입구 설치를 권고함.
	(25) 야영장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란 야영장 이용객이 직, 간접적으로 음용 및 섭취하는 경우를 포괄하며, 사업자가 급수시설에 대해 명백히 ‘먹는 물이 아님’을 게시하고, 먹지 않도록 조치 한 경우만 제외
	(26)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에 따라 소방시설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27)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은 각 시설 간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거리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 측정은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 *예) 야영시설(글램핑텐트)의 천막, 야영시설(글램핑텐트)에 연결된 확장형 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 데크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봄
	(28) 이격거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전 등록된 야영장도 개정된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부칙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19.3.4.)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5 보험	(29) 야영장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함(19.7.1.시행)
	(30) 야영장 휴업 기간 중에도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인지?	신고된 휴업기간 중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휴업 종료 후 영업재개 시점에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6 기타	(31) 야영장 내 청소년 숙박이 금지되어 있는지?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야영장 내 청소년의 숙박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다만,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제30조제8호)을 준수하여야 함

제2절 주요 민원 답변 사례

[1] 입지 관련 Q&A

입지지역

Q1.
야영장을 운영 할 수 있는
입지 가능 지역은?

A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야영장 시설 설치 가능 지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지역 세분	입지가능 여부	조례확인 필요여부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	×
		2종전용주거지역	×	×
		1종일반주거지역	△	○
		2종일반주거지역	△	○
		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	×
농림지역		농지법, 산지법, 초지법	△	○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별법*에서 개발행위 제한	×	×

A2.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도지역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관련부서 확인 필요).

*「자연공원법」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Q2. 하천부지 내에서 야영장업 운영이 가능한지?

A.

「관광진흥법령」에서는 하천부지 내 야영장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부지가 야영장 시설이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나 환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7 제5호사목에 따라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며, 「하천법」 등에 따른 점용허가 등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동 사항도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설비 관련 Q&A

건축물용도변경 관련

Q3.

야영장 예정지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하여 야영장 시설로 이용가능한가?

A.

-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정해져 있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법 제19조).
- 2) 용도변경 가능한 시설물의 경우 용도변경 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 구분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2. 산업 등의 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 3. 전기통신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
| 5. 영업시설군 | |

Q4.

야영장에 야영시설(글램핑 텐트) 설치 시 기준은?

A.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야영장 시설의 종류' 2.편익시설 중 야영시설에 해당하며,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설물이 야영시설로 가능한지 여부는 재질,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건축, 관광담당부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5.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시설을 복층
구조로 설치할 수 있는지?

A.
야영장 시설의 종류 중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층 이상의 복층의 형태로 설치 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영장 시설의 편익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재질,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6.
야영시설(글램핑텐트)에서
1100와트 이상 전기
사용이 가능한지?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7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1100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용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글램핑텐트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 등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별도로 전기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7.
야영용 트레일러
(카라반)는 자동차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5조 및 제10조 제4항) 그러나, 자동차관리특례규정에 의해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0조 제7호 및 시행규칙 제20조)
따라서,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야영시설로서 야영장내에서 편익시설로만 제공하고 도로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 등록 없이 임시 운행할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면 되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동일한 목적·사유로 중복 허가는 불가합니다.

Q8.
야영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설치해야 하는지?

A.
「관광진흥법령」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야영장 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야영장이 통상 의료시설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비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Q9.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막 내·외부 전체에 적용되는지? 내부 텐트 공간만 적용시키는 것인지?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는 야영시설의 내부(이너텐트), 외부 천막을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화재 사고와 유해가스 중독에 의한 사고 예방 위해 야영시설 내·외부를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함



야영시설의 취침 공간(내부천막) 뿐만 아니라, 거실 공간까지 야영 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함



유해가스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외부 공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함

건축허가 의제 관련

Q10.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야영장에 설치하는 건축물(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때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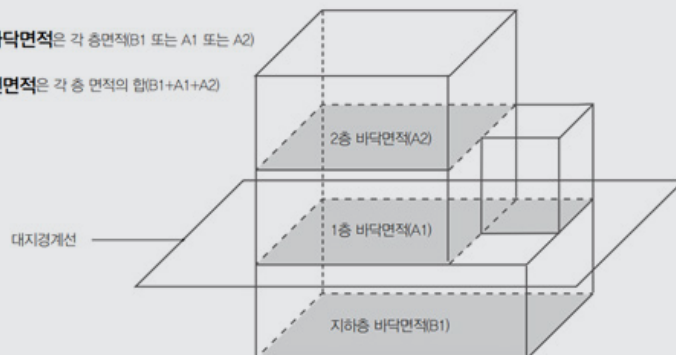
TIP 면적 용어에 대한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 층 및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즉, 건축물을 실제로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함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건축물을 지었을 때(2층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말함

바닥면적은 각 층면적B1 또는 A1 또는 A2)

연면적은 각 층 면적의 합(B1+A1+A2)



Q11.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영시설의 바닥면적은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인지?

A.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에 포함되지 않음

Q12.

야영장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바, 햇볕이나 비 가림을 위해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을 지면에 세우고, 그 내부에 천막을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형태도 야영시설(야영장 편의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A.

이용자 편의를 위한, 햇볕 차단용 구조물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정의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부서와 협의가 필요함



[3] 등록 절차 관련 Q&A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차이

Q13.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어떤 야영장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

A.

-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며,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입니다.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구분 취지 상 일반야영장은 야영사이트(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와 주차공간이 따로 분리된 곳을 말하며, 자동차야영장은 야영사이트와 주차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곳을 말하나, 현행법 상 일반야영장에서 야영사이트 옆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2) 일반야영장업은 1개 사이트 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주차 및 야영장비 설치 공간)으로 확보하고,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춰야 하며,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3) 야영장 부지 내에 야영용 천막만 설치 가능한 사이트와 차량을 함께 주차할 수 있는 사이트가 혼재되어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이처럼 일반야영장업 형태와 자동차야영장업 형태를 함께 운영할 경우 각각 분리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분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하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야영사이트50㎡ 이상, 1차선 이상의 차로 등)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야영장시설 중 편의·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Q14.

야영장 시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중 야영장 등록기준에서 규정한 시설 외의 시설(예, 문화예술체험장,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놀이형시설, 수영장 등) 설치 시 기준은?

A.

해당시설에 대해 규정한 타법이 존재하는 경우

-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근거법률:「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야외공연장(「공연법」: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 제공하는 시설 중 시설기준을 따른 공연장),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트램폴린(「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테마파크업) 등
- 이는 시설물에 따라 소관부처 및 관계 법령이 달리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해당시설에 대해 규정한 타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예) 무료로 이용 가능한 족구장,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물놀이장 시설 등
-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이 없고, 야영장 이용객을 위한 시설에 해당할 경우 야영장업 시설로 등록하고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과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관 법령이 없는 시종 시설일 경우에는 야영장업으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시설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 짚라인, 번지점프의 경우 현재 소관 법령이 없으나,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 신설 추진 중)

Q15.

행사(예, 뮤직페스티벌 등)에 부수적으로 야영시설을 설치하여 행사참여자에게만 제공할 경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A.

- 1) 일반적으로 캠핑행사, 축제행사, 공연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야영시설을 부수적으로 설치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2) 그러나, ① 행사가 단기간(7일 이내) 진행되더라도 일정한 주기별로 반복적으로 개최되거나, ② 반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장기간(7일 이상) 진행되고, 야영장 이용료 및 시설·장비 대여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는 야영장업행위로 인정되어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3) 만약,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대책이 별도로 확보되어야만 함. 따라서 사업자는 야영장업 안전·위생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안전·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Q16.

야영장 인근부지 시설을 야영장 편의시설(관리동,매점,화장실 등)로 이용 가능합니까?

A.

- 1) 야영장 (예정)부지내가 아닌, 인근 부지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야영장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관광진흥법」상 등록특례기준을 두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야영장내에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고 인근 시설을 이용 가능토록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등록특례 요건 : ① 해수욕장(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혹은 유원지(국토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단기간(4개월 이내) 운영하는 경우 및 ② 야영장업을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를 동시에 충족할 것.
- 3) 등록특례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야영장에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4) 또한, 편의시설의 경우에도 안전·위생 점검대상이며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근 부지내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점검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점검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7.

야영장에서 사용해야 하는 방염성능 천막은 무엇이며, 방염성능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A.

- 1) 직물의 방염성능은 '내세탁성(세탁한 경우에도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과 '비내세탁성(세탁불가제품. 세탁시 방염성능이 없어지는 제품)'으로 구분됨
- 2) 일반적으로 캠핑장과 같이 외부 수분 등에 노출되는 경우 내세탁성 직물을 사용해야 함
- 3) 사용하고 있는 물품의 방염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염성능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TITI, FITI, KATRI 등에서 실시)를 시행해야 하며,
- 4) 방염처리 업체를 통한 방염처리된 원단(방염성능에 합격한 제품은 합격필증/결과통보서 발급)을 구입하여 설치하면 안전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음

Q18.

**야영사이트 없이 야영시설
(글램핑텐트)이나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만으로
야영장 등록이 가능한가?**

A.

- 1) 야영사이트(야영객 천막을 칠 수 있는 야영공간)는 야영장업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 2) 따라서, 야영사이트 없이 글램핑텐트나 야영용 트레일러 등의 편익시설만으로 야영장업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 3) 그러나, 「관광진흥법」상 기본시설의 면적당 비율이나 설치해야 할 개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영장 부지내에 적어도 1개 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Q19.

「관광진흥법」상 자동차 야영장 진입로는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차로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A.

- 1) 야영장의 설치 특수성(계곡, 산지 등 외진 곳에 위치)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진입도로 규정은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령」상 차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참조)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 : 야영장업 등록기준

- 일반야영장업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업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 한 공간을 확보할 것

* 현황상 도로(농로, 마을안길 등)에 접해 있을 경우도 야영장 진입도로로 인정

- 2)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장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

-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생략

- (4)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침에 따른 도로 폭 확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이 가능함(국토부 의견)

Q20.

야영장업 등록특례기준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A.

1)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야영장업 등록특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특례 요건

(①, ② 동시 충족)

- ①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야영장업 하는 경우
- ② 야영장업을 위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이는 야영장 영업을 위해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2) 동 기준은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하는 야영장 및 야영장업을 위해 토지형질 변경을 하지 않은 야영장업에 대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더라도 인근에 있는 편의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등록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3)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야영장도 등록 후에 영업토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음성적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기간은 연속 4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매년 등록을 해야 합니다.

Q21.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A.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22.

야영장업 휴업 신고 후
영업 재개 시 별도의
신고 절차 필요합니까?

A.

휴업기간은 휴업 신고 시 제출한 휴업 통보(신고)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의 영업재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Q23.

1년짜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에 따라 야영장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새로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날짜는 변경등록이 수리된 날인가요? 또한 1년을 기간으로 한 양도양수 계약이 종료되어 원래의 소유주가 다시 대표자가 되었을 경우 다시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변경등록을 요한다면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1)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점은 변경 등록 후, 그 사업을 시작하기전까지 해야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6항)
- 2)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도 승계됨.
- 3) 대표자의 변경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필요

Q24.

한 사람이 펜션과 야영장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는데, 토지가 붙어있는 경우에도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는 필지 내에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존재해야 하는지?

A.

- 1) 토지 및 필지 관련 사항은 관광진흥법령 상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부서 검토 협조가 필요하며 인접 부지인 경우에도 업종 간 구분(경계)은 필요
- 2) 야영장업 등록시에 하수도시설과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펜션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등록은 불가능함

Q25.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수영장 주변에 텐트를 설치하여 물놀이 체험을 하는 이용객들에게 캠핑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숙박X, 단순 텐트만 제공)에도 야영장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A.

- 1) 야영장업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3호 다목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2) 관광진흥법령에 체육시설내 피크닉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피크닉 시설도 야영장업에 해당 될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 3) 현장에서의 운영방식과 입지, 다른 영업장 인.허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함

Q26.

바비큐 장비와 장소(텐트, 몽골천막 등)를 시간별로 대여해주고 바비큐 재료를 파는 캠핑 콘셉트의 식당이 야영장업 등록 대상인가?

A.

- 1) 야영장업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3호 다목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2) 현장에서의 운영방식과 입지, 다른 영업장 인.허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함
- * 유사 사례로 판례(광주지방법원 2024노618, 대법원 2024도20105)참고: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려운 점...텐트 등 야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위 시설 등은 일시적인 취사를 위해 제공된 것에 불과한 점 등...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Q27.

미등록 야영장의 판단이 애매함. 편의시설 없이 울타리만 치고 차박을 수용하는 시설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A.

- 1) 야영장업의 정의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3호 다목에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2) 단순히 화장실,전기 등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야영을 위한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야영장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야영장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절함

Q28.

야영장 등록 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별도 매뉴얼이 있는지?(개발행위, 건축허가, 상하수도 등 인허가를 확인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그 외에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음

A.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은 없으나, 지자체 업무매뉴얼 야영장업 등록을 위한 업무체계와 관련부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조바람.

Q29.

용도지역별 야영장 입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경우 야영장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운영중인 펜션 또는 식당 부지 내에 야영 사이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목이 '대지'일 때 유원지로 반드시 변경해야하는 것인지 현재 상태에서 등록 가능한 것인지, 지목변경 기준 모호)

A.

- 1) 야영장의 지목은 야영장업 등록 후,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라 유원지로 변경됨.
- 2) 용도지역, 지목 관련 사항은 관광진흥법령상 규정이 없으며 건축법 및 국토법 소관사항으로 해당 부서 검토 협조 필요

Q30.

기존 등록야영장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매하여 각각 구분된 야영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각 부지에 하수도, 화장실 등 야영장 등록을 위한 개별기준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 경우, 기존 등록야영장 운영자는 변경등록을 하고, 매매한 자가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가?

A.

시설과 면적, 면수 등이 재조정되었으므로 기존 사업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부 면적에 대해 매입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신규 등록을 하여야함



[4] 안전·위생점검 관련 Q&A

Q31.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발생 위험시 이용중지, 대피명령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A-1. 야영장 안전점검의 법적근거

야영장 안전점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검사)에 따라 점검 가능하며, 위반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검사) ①(생략)

-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37조(과징금의 부과)

-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A-2. 야영장 대피명령 등에 대한 법적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4년 7월)으로 야영장이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법 제40조(대피명령), 제42조(강제대피조치)에 따라 지자체(시군구) 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명령 가능

기타 「산림재난방지법」('26.2.1 시행, 구 산림보호법)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피명령 등)에 따라 대피명령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강제대피조치)

-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

산림재난방지법 (舊 산림보호법)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의 단장에게 같은 법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통제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피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8조에 따른 대피 등 명령을 거부한 자

※참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 안전위생기준)-4.대피관련기준 (사업자 의무사항)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Q32.

야영용 천막의 방염성능기준 적합 의뢰시험은 어느기관에 할 수 있나요?

A.

방염성능기준 적합여부 시험의 시행기관은 특정 업체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 또는 공공기관 모두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의뢰시험을 수행하며, 민간기관 중에는 KOTITI, FITI, KATRI 등이 가능합니다
(19.6월기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33.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A.

'19년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천막의 방염처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제1호마목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이란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 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①연소시험(세탁전후), ②연기밀도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Q34.

야영시설(글램핑텐트)의 방충망도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에 따라,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야영시설에 방충망이 주재료가 아닌 일부분에
한정하여 환기 및 해충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될 경우 위 내용에서 언급된 '천막등'에 방충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
료됩니다

Q3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마목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란 무엇인지?

A.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말하며, '벨크로' 형태의 출입구 설치를 권고합니다.

Q36.

야영장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한 경우,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6호나목에 따라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란 야영장 이용객이 직접 음용하지 않더라도, 식기 및 음식

세척을 통해 간접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급수시설에 대해 명백히 '먹는 물이 아님'을 게시하고, 먹지 않도록 조치 한 경우만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Q37.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A.

'19년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등)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 하도록 해야함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가목에 따라 소방시설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Q38.

야영시설(글램핑텐트)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은 시설은 각 시설 간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거리 측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9년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등) 간의 이격거리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 하도록 해야함
거리 측정은 야영용 시설 중 상시적인 시설 간의 최단거리로 측정합니다. * 글램핑텐트의 천막, 글램핑텐트에 연결된 확장형시설(화장실, 샤워시설, 편의시설 등), 데크 등은 상시적인 시설로 봄 ** 다만, 데크가 상부로 돌출된 구조물이 없고 바닥으로서의 기능만을 갖추고 있다면, 야영용 시설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Q39.

이격거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등록된 야영장도 개정된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규칙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한 자)는 부칙에 따라야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법령	개정 내용	시행일/경과조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 하도록 해야함

[5] 보험 관련 Q&A

Q40.

야영장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19.7.1. 시행)

*'19.8.12 기준 12개 보험사에서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상품 판매 중

또한 야영장업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 또는 공제 상품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및 제8항의 보장한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4.7월)으로 야영장이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 등)에 따른 보상한도를 충족하는 보험가입을 권고합니다.(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등)

Q41.

야영장 휴업 기간 중에도 보험가입이 의무사항 인가요?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야영장업의 휴업이 신고되었다면, 신고된 휴업기간 중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휴업 종료 후 영업재개 시점에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 기타 Q&A

Q41.

야영장 내 청소년 숙박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A.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야영장 내 청소년의 숙박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8조제5호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5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부 록

1. 고캠핑 홈페이지(gocamping.or.kr) 소개
2. 야영장업 서류심사 등록시 체크리스트
3.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4. 야영장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5. 야영장업 시설물 안전점검표(사업자용)
6. 야영장 안전점검표(지자체용)
7. 방염성능검사 요약서
8.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9. 위반사항 벌칙조항(타법 포함)
10.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1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1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01 고캠핑 홈페이지 소개 gocamping.or.kr

01 목적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등록 야영장 종합 정보포털
*전국 약 4,080개소(24.12월 기준)

02 주요내용

- 정부 새울시스템 활용 고캠핑 홈페이지 내 전국 등록야영장 정보
*새울시스템 : 국가행정정보망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인허가 정보 실시간 관리
- 사업자 요청 시 야영장 정보 및 사진 업데이트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주요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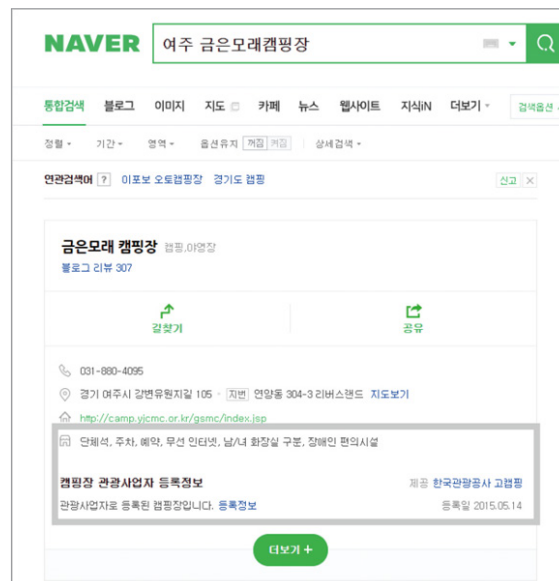
03 야영장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시스템 운영(법정 필수 교육)

- 교육근거 | 「관광진흥법」제2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및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5호타
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연1회 이상 의무 이수

04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공사 고캠핑 데이터 연동 네이버(NAVER) 지도 검색 시 캠핑장 관광사업자 등록 정보 제공

네이버 표출 화면



02 야영장업 서류심사 등록시 체크리스트

- 야영장업 등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아래 정렬된 서류 외에도 야영장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NO	문서명	구비여부	비고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	
3	신청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성명 및 주민번호 기재)	☐	
4	임대차계약서	☐	임대일시 해당 (임대인이 다수인 경우 임대인 전부 계약서 필요)
5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인터넷 열람 후 출력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법인만 해당
7	토지사용승낙서	☐	승낙서 및 승낙자 인감증명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토지의 평면도에 텐트가 설치되는 위치의 배치도 필요
9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	별지 제3호의2 서식
10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	
11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대장 (도면 포함)	☐	건축도면에 포함된 가설(건축물)대장 (화장실 등 확인 필요)
12	대피소 사용 승낙서	☐	주변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해당자만)
13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 및 오수량산정표	☐	정화조설치시 하수처리시설 준공서류, 오수량산정표(없을시 새로 하수처리시설 준공)
1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시설이 추가된 경우
15	상수도 설치 확인서	☐	
16	기타 서류()	☐	
17	기타 서류()	☐	

03 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세부업종	
소재지				영업개시일	
입지	토지용도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여부			
관리면적 및 운영현황	부지면적	건축면적(㎡)	1일 최대 수용인원	야영사이트수	운영일수
	(㎡)	(㎡)	(명)	(개)	(일)
편의시설 (규격, 면적, 개수, 용량 등 기입)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취사시설	샤워실
안전장치 등 (위치, 수량 등 기입)	소화기	확성기 등 방송장비	안전게시물	대피공간	관리요원
진입로	*포장·비포장, 차선(m)을 기재합니다				
주차시설	대 (㎡) / 야영지와의 거리(m)				
기타부대시설	*야영용 트레일러, 방갈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합니다				

04 야영장업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신청일		현장점검일		
대표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등록신청 세부업종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야영장 명칭	야영장 개장일			
야영장 주소	(전화:)			
부지 면적	m ²	건축 연면적	m ²	
부지 용도	야영사이트수			
1일 최대 수용인원	명	(일반야영/자동차야영 구분)	개	
시 설	☐ 상수도시설 ☐ 하수도시설 ☐ 전기시설 ☐ 가스시설 ☐ 화장실 ☐ 글램핑텐트 ☐ 야영용 트레일러 ☐ 물놀이장 ☐ 놀이시설 ☐ 기타()			
주차 시설	주차대수 : 대 / (주차장 면적 : m ²)			
점검 사항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 고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 여부	☐ 적격	☐ 부적격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 게시 여부	☐ 적격	☐ 부적격	
	비상시 긴급상황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확보 여부	☐ 적격	☐ 부적격	확성기 등
	소화기 확보 및 배치 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용 천막 2개소(100m ²)마다 1개 이상
	글램핑텐트, 야영용 트레일러 등 시설물 소화설비 구비여부	☐ 적격	☐ 부적격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손전등
	글램핑텐트 방염천막 사용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시설(글램핑텐트) 이격거리 유지여부	☐ 적격	☐ 부적격	시설물간 최단거리 3m 이상 이격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여부	☐ 적격	☐ 부적격	
	관리요원 상주 여부	☐ 적격	☐ 부적격	
	1개당 야영 사이트 규모 준수 여부	☐ 적격	☐ 부적격	일반야영장-천막 1개당 15m ² 이상 자동차야영장-천막 1개당 50m ² 이상
	야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 충족 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장 진입로 기준 충족 여부	☐ 적격	☐ 부적격	1차로 이상, 1차로인 경우 교행가능 구간 필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충족 여부	☐ 적격	☐ 부적격		
야영장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5 야영장업 시설물 안전점검표(사업자용)

0000년 0월 0일	야영장 안전점검표		
업체명	000 캠핑장	대표자	홍길동
주소	000도 000군 000면 000번지	점검일	0000년 0월 0일

구분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	사업자 또는 관리요원	홍길동	홍길동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상없음	개선필요
화재 예방기준	야영용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금지 및 1100와트 이하 전기용품만 사용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글램핑 및 트레일러의 경우 안전설비* 구비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 손전등		
	글램핑 천막 방염 제품 사용 여부 및 천막 출입구가 비상시 출입이 용이		
	글램핑 및 트레일러 간 3m 이격거리 확보		
	글램핑 및 트레일러 내에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 설치 금지 확인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은 별도 공간에 마련.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폭죽, 풍등의 사용 및 판매 금지 확인		
전기 사용기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받은 전기용품 사용여부 확인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예방을 위해 적정 높이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 확인		
	옥외용 전선 적정 설치(적정 깊이 매설 또는 적정 높이 설치, 피복 손상 여부 등) 확인		
가스 사용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 설치,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 및 용기 사용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할 경우 13kg 이하만 허용하고 안전 사용 안내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상없음	개선필요
대피 관련기준	긴급방송시설 또는 메가폰(엠프 최대출력 10와트, 가청거리 250m 이상) 1대 이상 구비		
	야영장 진입로에 적치물, 방해물 여부 확인		
대피 관련기준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정보 게시판(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 설치		
	자연재난 대비 대피계획 수립(이용객 안전 우려 시 야영장 이용 제한 및 대피)		
	구급약품, 구호설비 및 환자 긴급 후송대책 수립		
	정전 대비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치, 비상 손전등 구비		
	집중호우 대비 야영장내 배수시설 정상작동여부, 이물질 제거, 안전덮개 설치 등 확인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표지 설치, 접근 제한 및 안전관리 확보 조치		
	낙석, 붕괴, 추락, 낙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방지시설 및 위험 안내표지 설치		
	집중호우 대비 야영장내 배수시설 정상작동여부, 이물질 제거, 안전덮개 설치 등 확인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 확보(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야영장 입구 포함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 설치하고 이용객에 고지(설치 불가능할 경우 관리요원이 야간 순찰 실시)		
	체육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 안전기준 준수		
위생기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연 1회 실시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시설의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 상태 확인		
	'공중화장실' 법에 따른 화장실 설치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침구(요, 이불, 베개 등)의 환청과 수건을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세탁하는지, 일광 소독 및 수시 건조 여부		
기타	환기 및 조명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확인		
※ 특이사항(점검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 등) - - -			

06 야영장 안전점검표(지자체용)

0000년 0월 0일		야영장 안전점검표			
업체명	000캠핑장	대표자	홍길동		
주소	000도 000군 000면 000번지	점검일	0000년 0월 0일		
업체명	소속	성명	분야		
점검책임자					
점검참여자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이상 없음	개선 필요	세부 내용	조치 완료	추후 확인
화재 예방 기준	야영용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금지 및 1100와트 이하 전기용품만 사용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	소화기 미비치		
	글램핑 및 트레일러의 경우 안전설비* 구비 *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 손전등					
	글램핑 천막 방염 제품 사용 여부 및 천막 출입구가 비상시 출입이 용이한지	√				
	글램핑 및 트레일러 간 3m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미확보		
	글램핑 및 트레일러 내에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 설치 금지		√	화목난로 철거 필요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은 별도 공간에 마련.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	방화사 (방화수) 미비치		
	폭죽, 풍등의 사용 및 판매 금지		√			
전기 사용 기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받은 전기용품 사용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예방을 위해 적정 높이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					
	옥외용 전선 적정 설치(적정 깊이 매설 또는 적정 높이 설치, 피복 손상 여부 등)					
가스 사용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가스시설 설치,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 및 용기 사용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반입할 경우 13kg 이하만 허용하고 안전 사용 안내					
대피 관련기준	긴급방송시설 또는 메가폰(엠프 최대출력 10와트, 가청거리 250m 이상) 1대 이상 구비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	
		이상 없음	개선 필요	세부 내용	조치 완료	추후 확인
대피 관련기준	야영장 진입로에 적치물, 방해물 비치 금지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정보 게시판(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설치					
	자연재난 대비 대피계획 수립(이용객 안전 우려 시 야영장 이용 제한 및 대피)					
	구급약품, 구호설비 및 환자 긴급 후송대책 수립					
	정전 대비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 비치, 비상 손전등 구비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표지 설치, 접근 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조치					
	낙석, 붕괴, 추락, 낙상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방지시설 및 위험 안내표지 설치					
	집중호우 대비 야영장내 배수시설 정상작동여부, 이물질 제거, 안전덮개 설치 등 확인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 확보(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야영장 입구 포함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 설치하고 이용객에 고지(설치 불가능할 경우 관리요원이 야간 순찰 실시)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시설물 대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2년 이상 보관					
	각종 비상상황 대비 관리요원 상주					
	체육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 안전기준 준수					
위생 기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시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연 1회 실시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시설의 청소·소독 등 위생관리 상태					
	'공중화장실' 법에 따른 화장실 설치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침구(요, 이불, 베개 등)의 환청과 수건을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세탁하는지, 일광 소독 및 수시 건조 여부					
	환기 및 조명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기타	불법촬영장치 유무(화장실, 샤워실)					
합계		4	9		2	7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일 : 2025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07 방염성능검사 요약서

01 얇은포/두꺼운포 구분

- 가로/세로 1m의 방염천의 무게를 측정
- 450g이하 (얇은포) 450g이상 (두꺼운포)

02 시험기준

종류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접염횟수	내세탁성(전/후)	최대 연기밀도
얇은포	3초이내	5초이내	30cm ²	20cm	3회이상	기준 내/외	200 이하
두꺼운포	5초이내	20초이내	40cm ²	20cm	3회이상	기준 내/외	200 이하

- “얇은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m²의 중량이 450g이하인 것을 말한다.
-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m²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 (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현장방염처리물품”이란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된 물품을 말한다.

03 내세탁성 기준

- 커튼, 암막 및 직물로 제조된 무대막(벨벳류·부직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cm 이상, 깊이 27cm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한다.
 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 ± 3) °C로 유지시켜야 한다.
 3.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 ℓ 당 1 g의 비율로 첨가한다.
 4. 세탁은 세탁시간 30분, 행굼 2회, 탈수를 1회로 한다.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 건조기로 실시한다.
- 소방청고시(2019.1.10. 시행) 방염성능기준 각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자성로 331
http://www.kfi.or.kr

의뢰시험성적서

제 1902284 호

1. 신 청 인

- 업체명 : 한국관광공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세개로 10, 1층(반곡동, 한국관광공사)

2. 시 료 명 : 폴리옥스포드 500 D (국내)

3.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2019. 4. 1. / 제1902284호

4. 시험결과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비고
		세탁전					세탁후					
		1	2	3	4	5	1	2	3	4	5	
잔 염 시 간	3 초 이내	1.2	2.1	0.0	-	-	2.3	0.0	2.7	-	-	
잔 신 시 간	5 초 이내	0.0	0.0	0.0	-	-	0.0	0.0	0.0	-	-	
탄 화 면 적	30 cm 이내	7.2	6.2	6.4	-	-	10.2	9.1	14.7	-	-	
탄 화 겉 이	20 cm 이내	4.2	3.3	3.2	-	-	4.5	4.0	5.7	-	-	
접 염 횟 수	3 회 이상	4	4	4	4	4	4	4	4	4	4	

용 도 : 자체참고용(본 의뢰시험성적서는 소방설비안전비중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조건 : 온도 (20.0 ± 15.0) °C, 습도 (50 ± 30) % R.H.

시험방법 : 방염성능기준(소방시설안전관리공단 제정)

5. 시험담당자 : 이화학분석부 김홍기 대역 (인적서 : 021-602-6299)

2019년 4월 9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 비고 1. 위 시험결과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에 대한 결과이며, 시료의 명칭은 의뢰자가 제시한 것입니다.
2. 이 시험성적서는 당 기술원의 승인 없이 홍보, 광고, 선전, 소송 및 법적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총 : 1페이지 중 1페이지

의뢰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담당자의 금품, 향음, 권익제공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기술원 콜린신고센터(☎031-289-29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8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성적서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지하수 음용수(전항목) 시험성적서 교부

「지하수법」 제9조 제5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를 통보합니다.

시 료 명	지하수 음용수(전항목)	집수번호	AAA-00-B0000
의뢰자		검사목적	준공검사용
채수장소		신고번호	
		집수일자	2018.12.20
		채수일자	2018.12.20

NO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NO	시험항목	기 준	시험결과
1	일반세균	100 CFU/mL이하	0	24	벤젠	0.01 mg/L이하	불검출
2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25	톨루엔	0.7 mg/L이하	불검출
3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26	에틸벤젠	0.3 mg/L이하	불검출
4	납	0.01 mg/L이하	불검출	27	크실렌	0.5 mg/L이하	불검출
5	중소	1.5 mg/L이하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0.03 mg/L이하	불검출
6	비소	0.01 mg/L이하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0.002 mg/L이하	불검출
7	세레늄	0.01 mg/L이하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 mg/L이하	불검출
8	수은	0.001 mg/L이하	불검출	31	1,4-다이옥산	0.05 mg/L이하	불검출
9	시안	0.01 mg/L이하	불검출	32	경도	1000 mg/L이하	48
10	크롬	0.05 mg/L이하	불검출	3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이하	1.0
11	암모니아성질소	0.5 mg/L이하	불검출	34	냄새	없음	없음
12	질산성질소	10 mg/L이하	1.5	35	맛	없음	없음
13	카드뮴	0.005 mg/L이하	불검출	36	중	1 mg/L이하	불검출
14	보론	1.0 mg/L이하	불검출	37	색도	5도이하	1
15	세균	0.005 mg/L이하	불검출	38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0.5 mg/L이하	불검출
16	다이아지논	0.02 mg/L이하	불검출	39	수소이온농도	5.8-8.5	6.8
17	파라티온	0.06 mg/L이하	불검출	40	아연	3 mg/L이하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	0.04 mg/L이하	불검출	41	염소이온	250 mg/L이하	7.7
19	키바릴	0.07 mg/L이하	불검출	42	철	0.3 mg/L이하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0.1 mg/L이하	불검출	43	망간	0.3 mg/L이하	0.006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mg/L이하	불검출	44	탁도	1 NTU이하	0.50
22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mg/L이하	불검출	45	황산이온	200 mg/L이하	4
23	디클로로에탄	0.02 mg/L이하	불검출	46	알루미늄	0.2 mg/L이하	불검출

관 정	적합
수질기준 초과항목	

2018.12.27

09 위반사항 벌칙조항(타법 포함)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의 규정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3조(벌칙)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건축법」	<u>제11조(건축허가)</u>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제20조(가설건축물)</u>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u>제108조(벌칙)</u>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제110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하수도법」	<u>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u>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제76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u>제80조(과태료)</u>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차)50만원→(2차)70만원→(3차)100만원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농지법」	<u>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u>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u>제57조(벌칙)</u>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u>제14조(산지전용허가)</u>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u>제53조(벌칙)</u>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관계 법령	근거 조항	벌칙 및 행정처분
「자연공원법」	<u>제23조(행위허가)</u> ①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u>제27조(금지행위)</u>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u>제82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u>제86조(과태료)</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하천법」	<u>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u>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하천 및 하천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u>제95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10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등록취소 등)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마.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폐쇄 명령)			
바. 법 제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사.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아. 법 제 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차.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2) 카지노업 외의 관광사업	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5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

러.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9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고.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노.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제3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등록) 위반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만원 80만원 200만원
2.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0만원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4.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1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보험증권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1/2

상 품 명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번호		계약일자	2019-07-0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9년 07월 04일 00:00시부터 2020년 07월 04일 00:00시까지 이 보험계약에 기재된 증권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개월 -일

*상기 서명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아닌 경우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로 연락하여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재지 국내소재

[1] 담보위험 : 야영장사고배상책임

▶ 목적물사항

순번	목적물명	목적물내역	산출기준
1		자동차 Site 시설	Site 수:(31) 개
2		기타 시설	면적:(8,444) m ²
3		캐러밴, 글램핑시설, 트레일러, 망갈로 시설	개수:(6) 개
4		활동여장(간이 수영장)	개수:(2) 개
5		트레일러	개수:(1) 개

▶ 담보내역

순번	담 보 명	세 부 내 역	회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책적률
1	야영장사고배상책임담보		WON 대한 1만당	100,000,000	0	1
			WON 대불 1사고당	100,000,000	0	
2	야영장사고배상책임담보		WON 대한 1만당	100,000,000	0	2
			WON 대불 1사고당	100,000,000	0	

▶ 보험료 및 분납내역

[보험료] WON 688,000 [분납사항] 일시납 1회차(100% 2019-07-04) WON 688,000

단체상해영업부

보험대리점 :

연락처 :

발행일 : 2019년 07월 31일

12 부상등급별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액 한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신설 2019.3.4)

제18조제7항제2호 관련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1급	2천만원	-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척추체 분쇄성 골절 -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외상성 두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하 수종, 수혈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부상 - 고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 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화상·좌창·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시행한 부상 - 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상완골 삼각골절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천만원	- 상박골 분쇄성 골절 -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또는 경추 탈구 (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경추보조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슬관절 탈구 -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부상 - 천장골 간 관절 탈구 -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부상 -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3급	1천만원	1. 상박골 경부 골절 2.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수근 주상골 골절 5.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경골 과부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경골극 골절로 관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절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족근중족(Lisfranc)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48시간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양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경추궁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대퇴골 과부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900만원	1.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 거골 경부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건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골절 6.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과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절적 수술을 시행한 부상 11. 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5급	900만원	1.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족종골 골절 4. 상박골 간부 골절 5.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 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척골 근위부 골절 7.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거골 골절(경부는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500만원	1.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9.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10. 척골 주두부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12.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혈액 농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1.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4. 고관절 탈구 5. 견갑 관절 탈구 6.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7. 족관절 탈구 8.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 다발성 안면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8급	240만원	1. 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 골절 3. 주관절 탈구 4. 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및 오혜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늑골 골절 10. 뇌좌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안면부 열창,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요골 골두골 골절 3. 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수근 골절(주상골은 제외한다) 7.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은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 파열 10.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수근간 관절 탈구 및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160만원	1. 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바닥뼈 지골 간 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및 완관절을 말한다)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신전근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부상등급	한도 금액	부상 내용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 손가락 골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8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8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 해당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13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의 한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신설 2019.3.4)

제18조제7항제3호 관련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5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9급	2천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아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88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천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후유장애등급	한도 금액	후유장애 내용
12급	1천25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가벼운 정도의 일부 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